

# ASAN REPORT

---

## 시진핑 시기 중국의 사회통제 메커니즘

이동규, 김지연

2026년 6월



Asan Report

# 시진핑 시기 중국의 사회통제 메커니즘

이동규, 김지연

2026년 6월

##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 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 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이며, 2025년 11월 제출된 원고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친 후 2026년 6월 발간되었습니다.

## 저자

### 이동규

이동규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다.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국제지역대학원에서 국제지역학 석사 학위를, 중국 칭화대학(淸華大學)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외대 글로벌안보협력연구센터 연구위원(2015~2020년)을 역임했다. 연구 분야는 중국 정치외교, 한중 관계, 동북아 안보 등이다.

### 김지연

김지연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다. 베이징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정치사상) 석사학위를 받았다. 외교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연구 관심 분야는 미중 관계, 정체성, 종교 및 민족 갈등, 정치폭력 등이다.

# 목차

요약	06
I. 서론	08
II. 중국의 사회통제 강화 배경과 관련 법 체제	10
1. 시진핑 시기 중국의 사회통제 강화 배경	10
2. 사회통제 관련 법 체제 구축	13
III. 중국의 사회통제 메커니즘	20
1. 사상정치교육: 애국주의의 내면화	20
2. 인터넷 통제: 전방위적 검열 시스템	26
3. 사회신용시스템: 개인의 순응을 유도하는 평가-제재 시스템	29
4. 사회감시시스템: 텐왕·쉐량·스마트시티로 구현되는 초고도 감시사회	34
IV. 중국 사회통제의 특징과 함의	40
1. 중국 사회통제의 특징	40
2. 중국 사회통제의 함의	41
V. 결론	46
참고문헌	48

## 그림

[그림 1]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	22
[그림 2] 중국의 안면인식 감시기술	36
[그림 3] 텨왕공정으로 송환되는 해외 도피자들	38
[그림 4] 중국 사회통제 메커니즘 구성도	40
[그림 5] 중국의 백지시위	42
[그림 6] 중국의 감시 및 공안 기술 도입 국가 현황	44

## 표

[표 1] 반간첩법(개정)이 규정하는 간첩 행위	13
[표 2] 사상정치교육 방안에 따른 대학 학부생의 정치사상 필수 과목	24

## 요약

중국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의 행정, 입법, 사법, 군대 등 모든 국가권력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정부기관 외에도 공공기관, 학교, 민간 사업체, 사구(社區: 도시 내 아파트 단지 등을 포함한 주민 거주 지역) 등 사회 각 부분에 당조직을 운영하며 중국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사회를 통제해 왔다.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의 사회통제는 자국의 '기술굴기(科技崛起)'에 힘입어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강화되고 있다. 이는 경기하방 압력, 중국 정치의 제도화 훼손,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 서구 사상의 확산, 중국공산당 통치에 대한 반발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 안정을 확보하고 중국공산당의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시진핑 정부는 사상정치교육은 물론, 인터넷 및 언론에서의 선전(Propaganda)을 확대하며 중국 국민들에게 중국공산당이 원하는 사상과 인식을 심고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수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감시기술에 기반한 '사회신용시스템(社會信用體系; Social Credit System)', '텐왕공정(天網工程; Skynet Project)', '쉐량공정(雪亮工程; Sharp Eyes)' 등을 활용해 중국 국민 개인에게 실제적 불이익을 주는 통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명목적으로 사회안정과 범죄 예방을 주장하고 그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사회통제는 대내적으로 중국 사회 내에서 중국 국민들의 행동을 제약함으로써 중국공산당 통치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어 대규모의 시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국공산당의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 사회 내 정치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축적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 정치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대외적으로 중국의 사회통제는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의 이름하에 개도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해당 국가의 권위주의 정권 유지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권위주의 통치 방식과 그에 대한 지지를 확산함으로써 자유, 민주,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사회통제는 중국 내부의 상황으로만 볼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게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도전이 될 수 있다. 첫째, 시진핑 정부가 사회통제를 위해서 사상정치교육을 강화하고 애국주의에 기반한 인터넷 영상에 관대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한중 국민 간에는 문화 충돌을 넘어 가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역사와 문화, 가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 국민 간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치열해진다면 한중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중국이 자국의 사회통제 방식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중 권위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한다는 점에서 한중 간 체제와 가치의 이질성 문제가 한국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 간 국제협력 과정에서 불거질 위험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중국의 사회통제가 중국 국내 정치 외에도 한중 관계, 한국의 국제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 중국의 사회통제의 글로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사 입장국들(Like-minded Countries)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 나갈 때 한국 국민이 중국을 방문할 시 중국의 사회통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내적으로 중국 방문 시 주의 사항을 교육하고 배포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의 소통 과정에서 한국 국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제기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 I. 서론

2024년 12월 기준 중국공산당의 공식 당원 수는 중국 전체 인구의 약 7.1%에 해당하는 약 1억 27만 명이다.<sup>1</sup> 이처럼 거대한 인력을 가진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행정, 입법, 사법, 군대 등 모든 국가권력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정부기관 외에도 공공기관, 학교, 민간 사업체, 사구 등 사회 각 부분에 당조직을 운영하며 중국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 시기부터 형성된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와 사회감시체계는 중국공산당 1당 독재 유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2</sup>

중국공산당의 사회통제는 시진핑 시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사상정치교육은 물론, 인터넷 및 언론에서의 선전을 확대하며 중국 국민들에게 중국공산당이 원하는 사상과 인식을 심고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수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감시기술과 법 체제를 활용해 중국 국민 개인에게 실제적 불이익을 주는 통제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보안법(網路安全法; Cybersecurity Law), 데이터보안법(數據安全法; Data Security Law), 반간첩법(反間諜法; Counterespionage Law), 국가기밀보호법(保守國家秘密法; State Secrets Protection Law)을 개정 및 강화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자국의 ‘기술굴기’에 힘입어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안면인식 기술(Facial Recognition, FR) 등을 기반으로 중국 사회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2014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사회신용시스템(社會信用體系; Social Credit System)’은 중국 국민 각 개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미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Big Brother)’와 비교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6월에 《2024-2025 사회신용시스템 건설 행동계획(2024-2025 社會信用體系建構行動計劃; 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 7월 《국

1. “中國共產黨內統計公報”, 中國政府網, 2025.06.30.,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506/content\\_7029995.htm](https://www.gov.cn/yaowen/liebiao/202506/content_7029995.htm).

2. Minxin Pei, 『The Sentinel State: Surveillance and the Survival of Dictatorship in Chin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24, p. 3.

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관리방법(國家網路身分認證公共服務管理方法)을 시행하며 중국 사회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세분화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은 왜 사회통제를 강화하는가? 중국공산당의 사회통제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중국 사회와 개인을 통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중국을 넘어 국제사회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본 리포트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중국의 사회통제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그 효용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2장에서 시진핑 시기 중국의 사회통제 강화 배경과 법 체제를 살펴보고 3장에서 정치사회교육, 사회신용시스템, 감시기술 등의 사회통제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4장에서 중국 사회통제 메커니즘을 평가하고 그 함의를 도출한다. 미중 전략 경쟁이 가치 및 체제 경쟁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사회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중국체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대중국 정책을 설정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II. 중국의 사회통제 강화 배경과 관련 법 체제

### 1. 시진핑 시기 중국의 사회통제 강화 배경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이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중국공산당 통치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던 업적 정당성(Performance Legitimacy)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은 급속한 경제 성장, 사회 안정, 정치권력의 제도화 등 다양한 업적을 기반으로 통치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sup>3</sup> 그러나 시진핑 1기에 중국 경제는 10%대의 고속성장 단계를 마감하고 중고속성장 단계, 즉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고, 미중 무역전쟁과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 지표는 크게 악화됐다. 실업률 증가, 임금 체불 등의 이유로 ‘묻지마 범죄’나 시위가 확산되면서 중국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게다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하 시진핑)의 3연임은 중국공산당이 개혁개방 이후 추진했던 중국 정치의 제도화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과 함께 ‘집단지도체제(集團指導體制; Collective Leadership System)’를 구축하고, 집단지도 체제하에서 정치 엘리트들의 견제와 합의에 기반했던 정책 결정 방식을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Democr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로 선전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 사회 내 요구를 제한해 왔다.<sup>4</sup> 그런 점에서 중국 국민의 관점에서 시진핑의 3연임은 중국공

- 
3. Tony Saich, Zhao Dingxin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이 중국공산당 정당성의 유일한 근거라고 주장했고, Dickson은 2008년 금융위기 시 경제발전과 대중의 지지 간의 역관계를 발견하고 사회 안정을 다른 근거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위기관리능력, 반부패 운동 등을 통한 윤리적 성과 등이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Tony Saich, 『Governance and Politics of China』, London: Palgrave, 2004, p. 347; Zhao Dingxin, 〈The Mandate of Heaven and Performance i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hin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53, No. 3, 2009, pp. 416-433; Bruce Dickson, 〈Who Wants to be a Communist? Career Incentives and Mobilized Loyalty in China〉, 《China Quarterly》 Vol. 217, 2013, pp. 42-68을 참고.
4. 동시에 중국공산당은 2001년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 중국공산당이 선진생산력, 선진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을 제시하고 자본가 계급을 포섭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자본가 계급, 사회단체, 시민사회가 당의 지도통제를 받으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제한받고 있다.

산당이 주장해 왔던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를 부인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었다. 이는 불안정한 중국 경제 및 사회 상황과 맞물려 중국공산당 통치에 대한 반발과 불만이 분출될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2022년 백지시위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사상정치교육의 영향으로 애국주의 정서를 가진 청년들을 중심으로 중국 전국에서 시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국 사회에 축적된 정치적 불만을 엿볼 수 있다.

둘째, 기술 및 교통의 발전으로 서구 사상의 유입과 확산이 가속화되고 미중 전략 경쟁이 체제 및 가치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3년 9호 문건을 통해서 시진핑은 서구식 헌정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서구식 언론의 자유, 신자유주의, 허무주의 등을 중국의 지도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언급할 정도로<sup>5</sup> 중국공산당은 서구 사상의 유입과 그 파급력을 우려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유입된 서구 사상, 교통·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해외 교류 증가, 인터넷 공간에서의 용이한 정보 접근 등이 중국 국민의 정치의식 변화와 ‘화평 연변(和平演變: 평화적 정치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가치와 서구의 가치를 분리하고 있다. 시진핑은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연설에서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중화민족이 극악무도한 침략자(窮凶極惡的侵略者)인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승리하였음”을 강조했다.<sup>6</sup> 그는 19세기 서양 열강의 침략으로 야기된 ‘백년국치(百年國恥)’를 언급함으로써 중국 국민에게 과거 서구 열강의 침략과 수탈로 인한 역사적 수치심을 상기시키며 중국과 서구를 분리하려고 시도했다. 즉, 중국 국민에게 중국을 침략했던 서구 국가들의 제국주의 역사를 상기 시킴으로써, 민주, 자유, 인권 등 서구 국가의 가치는 결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오히려 중국의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인식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이는 서구 사상의 유입과 확산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경계와 우려를 시사한다.

시진핑이 2014년도에 ‘총체적 국가안보관(總體國家安全觀)’<sup>7</sup>을 제시한 이래 중국 정부는 대내외 위협요인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반간첩법(2014년 제정 및 2023년 개정), 국가보안법(2015년 재제정), 인터넷보안법(2016년 제정), 데이터보안법(2021년 제정),

5. Chris Buckley, “China Takes Aim at Western Ideas,” *The New York Times*, 2013.08.19., <https://www.nytimes.com/2013/08/20/world/asia/chinas-new-leadership-takes-hard-line-in-secret-memo.html>.

6. “在第十三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壹次會議上的講話”, 人民日報, 2018.03.21., <http://lianghui.people.com.cn/2018npc/n1/2018/0321/c417507-29879341.html>.

국가기밀보호법(2024년 개정) 등 안보 관련 법안을 제정해 왔다. 이러한 조치는 일차적으로 치열해지는 기술경쟁 속에서 서구 국가들의 대중국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간첩 행위로 처벌받은 대상이 대부분 중국인 혹은 화교임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이를 내부 단속용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중국 국민이 더 쉽게 서구 사상과 가치를 접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검열을 강화하고 내부를 단속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셋째,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이 역설적으로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토대를 제공했다. 즉, 중국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정보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확산과 해석을 통제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안면인식기술 등 첨단기술이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현대인의 일상이 사이버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각 국가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감시체계를 개발해 왔다. 특히,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발표하고, 정부 차원에서 첨단 기술 개발에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해 왔다. 그 결과 최근 미국의 기술 수출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AI 모델 ‘딥시크-R1(DeepSeek-R1)’, 초전도 양자컴퓨터 ‘주충즈 3.0(Zuchongzhi 3.0)’ 등을 개발하며 기술굴기를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등의 정책을 고수하며 자국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형성하고 타국과는 차별된 감시체계를 구축해 왔다.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 검열 및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정보의 유입과 정치적 불만을 관리하는 한편,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등 글로벌 기업 대신에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화웨이(Huawei) 등 중국 기업 중심으로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형성한 것이다.

COVID-19 팬데믹은 중국이 방역을 명목으로 전 사회에 대한 감시체계를 빠르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COVID-19 방역을 위해서 유동 인구의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추루통(出入通) 스마트방역관리시스템’, ‘블록체인 COVID-19 수집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드론을 이용한 열 감지 및 이동정보 수집 기술’, ‘AI 로봇 소독기’ 등을 개발했다. 이러한 중국의 첨단기술과 배타적 정책으로 중국 정부는 사생활 침해 문제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사회 안정과 범죄 예방을 명목으로 중국 사회에 대한 감시체계와 통제를 추진하는 토대가 되었다.

## 2. 사회통제 관련 법 체제 구축

시진핑 정부는 ‘법치(法治)’와 ‘사회치리(社會治理; Social Governance)’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법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통제의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1) 반간첩법

1993년 제정된 ‘국가안전법’<sup>8</sup>을 전신으로 하는 반간첩법(反間諜法; Counterespionage Law)은 2014년 제정되었으며, 2023년 4월 26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정 반간첩법이 통과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법은 기존의 5개장 40개 조항에 신규 조항을 추가하고 기존 조항을 개정·분할하여 최종적으로 6개장 71개 조항으로 정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반간첩법 제1장 제4조는 간첩 행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표 1] 반간첩법(개정)이 규정하는 간첩 행위**

- (1)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이 실행 또는 지시·후원을 통해 타인이 실행하도록 하거나, 국내외 기관·조직·개인이 이와 결탁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안보를 해치는 활동.
- (2) 간첩 조직에 가담 또는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으로부터 임무를 받거나 이에 협력하는 일.
- (3)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 이외의 국외 기관·조직·개인이 실행 또는 지시·후원을 통해 타인이 실행하도록 하거나, 국내 기관·조직·개인이 이와 결탁해 국가기밀 및 정보 그리고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자료·물품을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한 경우, 또는 책동·유인·협박·매수를 통해 국가 공직자가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활동.
- (4)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이 실행 또는 지시·후원을 통해 타인이 실행하도록 하거나, 국내외 기관·조직·개인이 이와 결탁해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 또는 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해 사이버 공격·침투·교란·통제·훼손을 하는 활동.
- (5) 적을 위해 공격 목표를 지시하는 일.
- (6) 다른 간첩 활동을 전개하는 일.

출처: “중국 반간첩법(2023년 개정) 전문 (번역본)”, 중앙일보, 2023.07.06.

7. 2014년 4월 15일에 개최된 중앙국가안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진핑은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최초로 제시했다. 시진핑 정부는 이를 통해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사이버, 우주 등 모든 영역에서 중국공산당 통치와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를 안보의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적용대상의 범위를 기존에 비해 더 넓히고, 간첩 행위에 대한 국가안전 기관(國家安全機關)의 조사처리 권한을 보강했으며, 간첩 행위자에 대한 법률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간첩 행위의 범주를 기존의 ‘국가기밀 및 정보’에서 ‘기타 국가안전과 이익과 관계된’ 범위까지 확대하며 포괄적인 내용을 간첩 행위로 정의했다. 뿐만 아니라 간첩 행위의 범위를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하여 국가기관 및 기밀 관련 부처와 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침투, 교란, 통제, 훼손하는 행위(제4조 제4항)도 간첩 행위로 명시했고,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제4조 제4항)와 중국 국민 등을 활용해 제3국을 겨냥하는 간첩 행위(제4조)도 처벌 대상으로 간주했다. 다음으로 집행기관인 국가안전기관에 데이터 열람과 수집(제26조), 소환(제27조), 자산정보 조회(제29조) 등의 권한을 추가로 부여했고, 간첩 혐의가 있는 경우 임의로 휴대 물품 등을 검사하고(제24조), 강제 소환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 심문(제27조)을 가능케 했다. 마지막으로 간첩 혐의 입증 없이도 행정처분을 허용하며(제54조), 기존의 행정 구류 외에도 벌금(제54조), 책임자 면담(제56조), 상급 주무부처에 통보(제56조), 관련 면허 및 등록 취소(제54조) 등의 신규 행정처벌 수단을 추가했다.<sup>9</sup>

중국은 반간첩법 관련 사건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반간첩법 제정으로 폐지된 ‘국가안전법’을 2015년 새롭게 제정한 이후, 매년 4월 15일을 ‘전국민 국가안전 교육의 날(全民國家安全教育日)’로 지정하여 2016년부터 해마다 국가안전법 적용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중국 국내 법률사무소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안전기관 등 관련 사법기관에서 발표한 53건의 국가안전법 관련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간첩 행위로 처벌받은 가담자 대부분이 중국인 혹은 화교인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총 53건의 사례 중 절반 이상은 개인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를 한 사건이었으며, 19건은 중국 내의 다국적 기업이나 상공회의소가 간첩 행위

- 
8. 1993년에 제정된 ‘국가안전법’은 구(舊) ‘국가안전법’으로 스파이, 방첩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2014년 반간첩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됨. 이후 2015년 제정된 신(新) ‘국가안전법’은 국가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 정치, 국토, 군사, 문화, 과학기술 등 11개 분야의 국가안전 임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준영, <중국 국가안전법제의 체계 연구—신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을 중심으로>, 《중국법연구》 제32집, 2017, pp. 2-5.
9. “中華人民共和國反間諜法(主席令第十六號)”, 中國政府網, 2014.11.01., [https://www.gov.cn/zhengce/2014-11/01/content\\_2775484.htm](https://www.gov.cn/zhengce/2014-11/01/content_2775484.htm); “中華人民共和國反間諜法”, 中國政府網, 2023.04.27., [https://www.gov.cn/yaowen/2023-04/27/content\\_5753385.htm](https://www.gov.cn/yaowen/2023-04/27/content_5753385.htm).
10. 王鍊, 曹瑩, “從《反間諜法》的修訂看企業的國家安全合規管理義務(下)”, 環球律師事務所, 2023.06.15., <https://www.glo.com.cn/Content/2023/06-16/1052094534.html>.

에 연루된 사례였다. 이들의 국적은 다양한 듯 보였으나, 사실상 처벌 대상의 대부분은 중국 내 기업의 중국인 고위 임원이나 직원이었으며,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도 중국인이거나 화교인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반간첩법 개정 이후 내국인에게 적용된 사례는 공개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중국의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國家安全部)가 ‘전 국민 국가안전 교육의 날’을 맞아 공개한 ‘10대 반간첩 사례’<sup>11</sup>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간첩법의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10개의 사례 중 캐나다 국적의 대북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Michael Spavor)와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Michael Kovrig)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계에 의한 간첩 사건의 경우, 직무상 국가 비밀정보를 접촉 또는 파악하고 있는 중국인이 보수를 받고 비밀정보 등을 외국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간첩 행위 관련 형사절차가 진행된 사안이 다수이며, 일부 군사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공유한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다.<sup>12</sup> 사례별로 살펴보면 군사 기밀 관련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홍콩과 대만에 관한 사례도 하나씩 포함되었다. 홍콩과 대만의 경우 각각 중국계 외국인이 홍콩 반정부 시위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1년형이, 대만 출신의 학자가 대만 정보기관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이 선고되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최근 중국인을 간첩 혐의로 구금하는 사건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번에 개정된 반간첩법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반간첩법을 근거로 외국인을 억류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우려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개정된 반간첩법은 현재까지 중국인 및 화교를 주요 대상으로 집행되면서 중국 사회를 통제하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 2) 국가기밀보호법

국가기밀보호법(保守國家秘密法; State Secrets Protection Law)은 1988년 9월 5일 제7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해 제정된 이후 2010년에 한 차례 개정을 거쳤

11. “重磅！回顧“十大反間諜案例”起底境外間諜機關卑劣手法”，央視網，2024.04.14., [https://content-static.cctvnews.cctv.com/snow-book/index.html?item\\_id=17747072820584725277](https://content-static.cctvnews.cctv.com/snow-book/index.html?item_id=17747072820584725277).

12. 김정애, <중국 개정 반간첩법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3권: 4호, 2023, p. 70.

으며, 2024년 2월 약 14년 만에 두 번째 개정이 이루어진 후 같은 해 5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개정안은 12개 조항이 추가되고 38개 조항이 수정되어 총 6개장 6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개정안은 법안 도입부에서 국가기밀 보호 업무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도(領導)를 새롭게 명문화하며(제1장 제3조)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특히 국가기밀의 정의와 범위는 확대하고 퇴직 인력에 대한 기밀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법에서 정의한 국가기밀 외에도 부칙(제6장 제64조)을 신설하여 “기관 및 단체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한 사항 중 국가기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유출될 경우 일정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비밀관리방법(工作秘密管理辦法)을 적용하여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밀 관련 인력이 퇴직하는 경우 기존에는 퇴직 후 비밀 해제 기간(脫密期)<sup>13</sup> 내에 취업을 제한하는 데에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밀 해제 기간 내에 취업뿐만 아니라 출국도 제한되며, 비밀 해제 기간 이후에도 국가기밀 규정을 준수하고 비밀보호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제3장 제46조).<sup>14</sup>

그 외에도 자국민의 보안 인식 제고에 나서며 법적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기밀보호 교육과 홍보를 장려하는 조항(제1장 9조)을 추가하여 기밀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설파하고 사회 전반의 보안 인식을 향상하고자 했다. 법적 책임에 있어서도 기존의 처벌 및 형사책임을 묻는 것 외에도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규정(제5장 제57조, 제60조)을 추가하여 개인과 기업이 선제적으로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sup>15</sup>

국가기밀보호법 위반 사례는 자국민 위주로 각 지자체의 국가기밀보호국(國家保密局)에서 대표 사례로 발표되거나, 정부 산하기관 혹은 대학교 교육자료에서 인용되어 공개되

13. 퇴사 전에 비밀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해 비밀보호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_번역본(2024.02.27. 개정, 2024.05.01. 시행)”, 국회도서관, 2025.02.20.

14. “中華人民共和國保守國家秘密法”, 中國政府網, 2024.02.28.,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02/content\\_6934648.htm](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02/content_6934648.htm).; “中華人民共和國保守國家秘密法”, 中國政府網, 2010.04.30., [https://www.gov.cn/jfjfg/2010-04/30/content\\_1596420.htm](https://www.gov.cn/jfjfg/2010-04/30/content_1596420.htm).

15. “中華人民共和國保守國家秘密法”, 中國政府網, 2024.02.28.,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02/content\\_6934648.htm](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02/content_6934648.htm).

었다. 법 개정 전부터 정보화 환경에 맞춰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 어플을 사용한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공산당원 홈페이지(共産黨員網)<sup>16</sup>와 상하이시(上海市) 국가기밀보호국<sup>17</sup>은 각각 인터넷 연결 환경에서 기밀문서 작업에 따른 정보 유출(2021)과 위챗(WeChat) 및 QQ 메신저를 활용한 기밀문서 전송(2022) 등에 관한 사례를 공개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저장성(浙江省) 국가기밀보호국<sup>18</sup>에서 발표한 2023년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위챗으로 기밀문서 스캔 및 텍스트 추출(8월), 타인에게 기밀자료 대리수령 부탁(7월), 기밀자료 불법 복사 및 전송(5월), 일반 컴퓨터로 기밀문서 불법 작성 및 전송(10월), 휴대폰으로 기밀문서 불법 촬영 및 전송(12월), 기밀 프로젝트 자료 불법 전송(7월) 등이 보고되었다. 다양한 자국민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기밀보호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자발적 준수를 독려했다.

### 3) 데이터보안법

데이터보안법(數據安全法; Data Security Law)은 중국의 ‘데이터 3법’<sup>19</sup> 중 두 번째로 제정된 법으로 2021년 6월 1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총 7장 55개 조항으로 구성된 최종안이 통과된 이후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데이터보안법은 데이터 안전 제도 확립, 데이터 규제 범위 확대, 데이터 보호 의무 위반 시

16. “【舉案說法】泄密案例來了：這三種心理最要不得！”，共産黨員網，2022.07.11., <https://www.12371.cn/2022/07/11/ART11657494005855691.shtml>.

17. “上海市通報5起泄密典型案例”，上海市國家保密局，2022.06.27., <http://www.shbmj.gov.cn/shbmj/gzdt/bmj/17225.jhtml>.

18. “浙江省通報7起違反保密法律法規典型案例”，浙江省國家保密局，2024.09.23., [https://www.zjbm.gov.cn/art/2024/9/23/art\\_1228981945\\_58517264.html](https://www.zjbm.gov.cn/art/2024/9/23/art_1228981945_58517264.html).

19. 중국의 데이터 3법은 ‘네트워크보안법(網絡安全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個人信息保護法)’으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 체계이다. ‘네트워크보안법(2017.6월 시행)’은 사이버 공간상의 안보 영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법률로, 이후 ‘데이터보안법(2021.9월 시행)’은 데이터 보안 및 처리 활동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개인정보보호법(2021.11월 시행)’은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명문화했다. 정보은, 김진형, <중국의 ‘데이터 3법’ 제정과 개인정보 보호 2.0시대에 대한 의미 고찰>, 《중국지역연구》 제 9권: 3호, 2022, p. 88.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에 대한 정의와 분류를 명문화하여 포괄적인 데이터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데이터 보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데이터보안법은 전자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법제화를 이뤄낸 네트워크보안법에서 나아가 중국 법 체계 최초로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포함했다. 데이터보안법은 데이터를 국가기밀과 관련된 데이터(제7장 제53조)나 군사데이터(제7장 제54조)를 제외한 전자 또는 기타 방식의 정보에 대한 기록(제1장 제3조)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sup>20</sup>

또한 데이터 유형과 등급 분류에 기반한 보호 제도를 구축해 데이터 보안을 보다 체계화했다. 데이터는 ‘국가핵심데이터(國家核心數據)’와 ‘중요데이터(重要數據)’ 등으로 구분된다. ‘국가핵심데이터’는 동법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관련 정의와 처벌 조항이 별도로 명시되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가핵심데이터’는 국가 안보, 국민경제의 명맥(命脈), 중요한 민생, 중대한 공공이익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의미하며(제3장 제21조), 국가핵심데이터로 구분된 데이터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며 법령 위반시 최고 1,000만 위안(약 19억 원)의 과징금, 영업 허가 취소, 형사 처벌 등 제재가 부과된다(제6장 제45조). 중요데이터의 경우, 중국 각 지방 정부와 부처가 소관 산업 및 분야에 해당하는 중요데이터의 구체적인 목록을 마련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했다(제3장 제21조). 중요데이터의 처리 활동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제4장 제30조),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국외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최고 1,000만 위안(약 19억 원)의 과징금, 영업 허가 취소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제6장 제46조).<sup>21</sup>

2023년 데이터보안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사회 각계에서 사례집과 분석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2개의 데이터보안법 대표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sup>22</sup>에 따르면 위반 사례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건에서 2022년 6건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7월까지 21건이 발생했다. 데이터보안법 위반 사유로는 데이터 관련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관리 제도의 부재가 66%로 가장 많았다. 그중 데

20. 이정표, <중국 데이터보안법에 대한 연구-중요데이터의 식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3권: 4호, 2022, p. 177.

21. “中華人民共和國數據安全法”, 中國人大網, 2021.06.10., [http://www.npc.gov.cn/npc/c2/c30834/202106/t20210610\\_311888.html](http://www.npc.gov.cn/npc/c2/c30834/202106/t20210610_311888.html).

22. “重磅！數據安全法實施近兩年來的處罰案例分析”, 搜狐, 2023.08.17., [https://www.sohu.com/a/712618505\\_120667251?utm](https://www.sohu.com/a/712618505_120667251?utm).

이더 보호 의무 이행 관련 사례가 28건이었으며, 데이터 보안 비상대응 조치 관련 사례가 3건, 데이터 리스크 평가 및 모니터링 관련 사례가 3건, 데이터 거래의 보안 관련 사례가 2건으로 보고되었다.

데이터 보호 의무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로 광저우(廣州) 기업과 저장성 기업을 들 수 있다. 2022년 2월 광저우의 ‘운전 교육 플랫폼(駕培平臺)’은 교육생들의 개인정보 1,070만여 건을 저장하고 있으면서 데이터 보안 관리 제도와 운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교육생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및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위법 행위로 판단되었다. 해당 기업에는 광저우 공안당국으로부터 경고와 함께 5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었다.<sup>23</sup> 2023년 3월 저장성의 테크 기업이 정부 부처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자사가 임대한 공공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여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저장성 공안당국은 해당 기업에 100만 위안,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에게 8만 위안, 직접 책임자에게 6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sup>24</sup>

처벌은 주로 벌금형 부과와 행정처분으로 이뤄졌다. 전체 사례 중 66%가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정확한 벌금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고 처분과 함께 기한 내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단, 사안의 경중과 피해 규모에 따라 기업에 최대 80억 2,600만 위안(약 1조 6천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으며, 개인에 대한 형사구금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sup>25</sup>

23. 清華大學智能法治研究院, “我國《數據安全法》生效以來行政執法情況報告”, 安全內參, 2023.06.17., <https://www.secrss.com/articles/55729>.

24. “最高罰款100萬！31起《數據安全法》執法案例盤點！”, 搜狐, 2023.07.14., [https://www.sohu.com/a/700016470\\_121647215](https://www.sohu.com/a/700016470_121647215).

25. “重磅！數據安全法實施近兩年來的處罰案例分析”, 搜狐, 2023.08.17., [https://www.sohu.com/a/712618505\\_120667251?utm](https://www.sohu.com/a/712618505_120667251?utm).

### Ⅲ. 중국의 사회통제 메커니즘

중국공산당은 전통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국 사회를 감시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기술굴기, 그리고 정세 변화에 맞춰 중국 정부는 사회통제 관련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본 장에서는 사상정치교육과 언론통제, 사회신용시스템, 감시기술과 톈왕 공정을 중심으로 중국의 사회통제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 1. 사상정치교육: 애국주의의 내면화<sup>26</sup>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집권 정당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배체제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 선동과 대중 정치교육을 통해 대중의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 낸다.<sup>27</sup> 그런 점에서 중국에게 이데올로기는 집권 정당에게 통치 권한에 대한 적법성을 부여하고 피지배 상태에 있는 대중들이 그 통치 정당성을 수용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鄧小平)은 이데올로기를 4개 현대화(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저항과 비판을 해소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데올로기의 영역을 당 내부나 정치 부문으로 한정하지 않고, 교육, 언론, 정치선전, 문예, 예술 등 사회 전 부분으로 확대하고자 했다.<sup>28</sup>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대중을 교육하고 여론을 조성하여 중국공산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려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신념체계가 아니라 대중의 합의와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정치수단으로 전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29</sup>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도 전통적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국

26. 본 절은 이동규, 〈중국공산당 이데올로기 전략의 효용성 연구 - 중국의 정치사상교육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68권, 한국중국문화학회, 2020의 일부 내용을 리포트 형식에 맞춰 수정 및 보완했다.

27. Xiaobo Su, "Revolution and Reform: the role of ideology and hegemony in Chinese politic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0, No. 69, 2011, p. 312.

28. 中國中央文獻研究室編,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十九冊》, 中央文獻出版社, 1998, p. 508; 中國中央文獻研究室編, 《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選編》(上), 中央文獻出版社, 1982, p. 348.

29. 安祥仁, 《中國共產黨意識形態理論的當代歷史發展》,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5, pp. 95-96.

내외 상황에 따라 상당히 실용적이며 유동적인 모습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런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은 사상정치교육의 강화와 언론 통제로 이어졌다. 한 개인에게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신념체계로 작동하는데, 이것은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범주화(Self-Categorization)와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의 과정을 통해서 내면화되는 것이고, 교육은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공동체 의식과 동질적 문화를 형성하도록 통치자나 국가의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이다.<sup>30</sup>

중국공산당은 1986년 9월 28일 중국공산당 제12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중공 중앙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지도방침에 대한 결의(中共中央關於社會主義精神文明建設指導方針的決議)》를 발표했다. 이 결의에 의하면,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에 있어 경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교육, 과학, 문화 건설을 경시하는 중대 실수를 범하였다고 인정했다. 특히, 1996년 10월 10일 중국공산당 제14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 강화와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한 결의(中共中央關於加強社會主義精神文明建設若幹重要問題的決議)》는 중국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협하는 서구 사상의 유입과 확산에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사상정치교육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사상정치 전공을 주요 대학에 신설하며 사상정치교육을 담당할 교육자들을 배출하였을 뿐 아니라, 사상정치교육 수업을 세분화하고 체계화해 왔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같은 전통적 이론 수업 외에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강조하며 중국사, 당사(黨史), 국제정세, 애국주의 교육, 집체주의 교육, 법률 교육 등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정치사상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다.<sup>31</sup> 그 결과 현재 중국 내 정치사상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연계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모든 학생은 초등학교부터 ‘더위(德育: 도덕교육)’<sup>32</sup>라는 이름의 사상정치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하며, 대학생들은 자기 전공 외에도 정치사상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심지어 대학 입학시험인 ‘까오카오(高考)’나 석박사생 입학시험에서

30.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p. 1-3.

31. 陳錫敏, 〈思想政治理論課與大學生國家認同〉, 《教學與研究》2期, 2017, p. 88.

32. ‘더위’는 협의의 의미로는 중국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을 의미하지만, 광의의 의미로 대학의 사상교육, 정치교육을 포함하며, 중국 내 정치교육, 사상교육, 도덕교육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도 사상정치교육 과목의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중국은 1990년대부터 애국주의를 사상정치교육의 핵심으로 정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해 왔다. 1991년 4월 중국 교육위는 《초중고생들의 진일보된 애국주의 교육 활동 전개에 관한 의견(關於在中小學進一步開展愛國主義教育活動的意見)》을 발표했고, 이어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1994년 8월 23일에 공식적으로 《애국주의 교육 실시 요강(愛國主義教育實施要綱)》을 발표하며 애국주의가 사상정치교육의 핵심임을 천명했다. 즉,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등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믿음과는 상관없이 민족주의적 감성에 기초하여 중국 국민들의 통합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 속에서 중화민족을 강조하고 중국의 전통문화의 내용을 차용하는 모습이 확대됐다. 중국의 전통적 가치인 ‘천명(天命)’을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과 연결하거나, 민본사상을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爲人民服務)’는 중국공산당 기본윤리의 근거로 제시하거나, ‘중화민족의 부흥’, ‘조화로운 사회’와 같은 정치 슬로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 [그림 1]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



출처: 연합뉴스.

또한, 2001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한 중국은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정치사상교육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의 전달 및 주입 외에 개인의 가치, 도덕적 자질, 시민의식의 배양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2001년 중공중앙의 《시민의 도덕 건설 실시 강요(公民道德建設實施綱要)》는 경제 성장 속에서 황금주의, 쾌락주의, 극단적 개인주의, 부패 등이 도덕적 무질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산주의적 가치 외에도 개인의 가치와 도덕의식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덕적 자질, 정신건강 등이 정치사상교육의 선택 과목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민 교육(Citizenship Education)이 중국의 정치 변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sup>33</sup> 중국 내에서 시민의 개념이 집체적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고, 그 요구 조건 또한 ‘사유신인(四有新人)<sup>34</sup>임을 볼 때 서구 사회의 시민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치사상교육에 세계 정세, 법률, 도덕 등 다양한 커리큘럼이 포함되면서 사상정치교육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주입에 그치지 않고 전 인격적인 교육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관, 도덕관, 가치관, 심지어 세계 정세에 대한 관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한 개인의 관념체계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애국주의의 도입과 커리큘럼의 확대는 1998년의 《고등교육기관의 ‘량커(兩課)’ 수업 개설 규정 및 그 실현 업무에 대한 의견(關與普通高等學校兩課課程設置的規定及其實現工作的意見, 이하 98 방안)》과 2005년의 《대학생 사상정치교육 강화 및 개선에 대한 의견(關與進一步加強和改進大學生思想政治教育工作的意見, 이하 05 방안)》을 통해서 진행되었는데, 98 방안에 의해서 마르크스 이론 과목 외에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 두 과목이 개설되었고, 05 방안에 따라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가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라는 필수 과목으로 병합됐다.

---

33. 비록 공민이 서구의 시민과 제한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시민과 민주주의의 관계, 혹은 국민의 의무 외에도 권리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Li Ping, Zhong Minghua, Lin Bin, and Zhang Hongjuan, 〈Deyu as moral education in modern China: ideological functions and transformations〉,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 33, No. 4, 2004, 혹은 Lupita H.R. Kim, 〈Complying with Global Standards, Changes in Political Educa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Knowledge Cultures》 Vol. 1, No. 3, 2013, pp. 45-54을 참고.

34. 사유신인은 이상, 도덕, 문화, 기율(紀律)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개인의 권리보다는 민족과 국가에 헌신하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표 2] 사상정치교육 방안에 따른 대학 학부생의 정치사상 필수 과목

사상정치교육 방안	필수 과목 내용
85 방안	1. 마르크스 이론: 마르크스 이론원리, 중국혁명사, 중국사회주의노선, 세계정치경제와 국제관계(예술 및 사회과학 학생 대상)
98 방안	1. 마르크스 이론: 마르크스주의 이론원리,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이론원리, 마오쩌둥 사상개론, 덩샤오핑 이론개론, 현대국제정치경제와 국제관계 2.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도덕, 법률기초, 당대 정세와 정책
05 방안	1. 마르크스 이론: 마르크스주의 기본원리개론,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삼개 대표 중요사상 개론, 중국근현대사강요 2. 사상도덕수양과 법률기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도덕과 법, 당대 정세와 정책

출처: 이동규, <중국공산당 이데올로기 전략의 효용성 연구 - 중국의 정치사상교육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68권, 한국중국문화학회, 2020, p. 151.

상술한 내용에 따른 필수 과목 커리큘럼의 변화는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마르크스 이론과 관련된 필수 과목을 보면 수업 명칭이 약간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지속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애국주의 교육이 강조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이 분명해지면서, 수업의 강조점이 크게 변화했다. 1980년대 교육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등 전통적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후 마르크스 이론의 수업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즉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 공산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의 특수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면서 중국을 현재와 같은 강대국으로 발전시켰음을 강조하고, 그런 중국공산당의 시대 인식과 정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근현대사강요 수업은 일종의 국정사(國情史) 수업으로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의 투쟁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아편전쟁부터 5.4 운동까지의 80년, 5.4 운동에서 신중국 건국까지의 30년, 신중국 성립에서 문화대혁명까지의 30년, 개혁개방에서 현재까지의 30년 역사를 서술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업적과 중화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중국 대학생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강한 민족주의적, 반서구적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민주와 자유 같은 서구의 가치에 따라 중국공산당에게 대항하기보다는 서구 국가로부터 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공산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면서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은 반서구적, 민족주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전략과 맞물려 중국 내 정치사상교육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시진핑은 “경제 건설이 당의 중심 업무이지만, 이데올로기는 더 중요한 당의 중요 업무”라고 강조하면서,<sup>35</sup> 고등교육기관의 정치사상교육에 대한 감독과 관리 강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맞춰서 중국 교육부도 2015년 7월 《보통 대학 사상정치이론수업 건설체계 창신 계획(普通高校思想政治理論課建設體系創新計劃)》과 9월 《고등교육기관 사상정치이론 건설 표준(高等學校思想政治理論課建設標準)》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정치사상교육의 내용뿐 아니라 대학 내 사상교육 관련 기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29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치사상교육 및 당 관리를 감찰하면서 정치사상교육의 성과가 대학 평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되었다.<sup>36</sup> 게다가, 2018년 4월 중국 교육부는 《신시대 고등교육기관 사상정치이론 업무에 대한 기본 요구(新時代高校思想政治理論課教學工作基本要求)》를 발표하며 대학이 정치사상교육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사상교육의 대상과 영역 또한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12년 공표된 ‘사회주의핵심가치관(社會主義核心價值觀)’을 고등학교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암기하게 하거나, 2013년 이래로 『시진핑 치국이정을 말한다(習進平談治國理政)』, 『시진핑 개혁전면심화를 논하다(習進平關與全面深化改革論述摘編)』, 『시진핑 총서기 중요 강화 독본(習進平總書記系列重要講話讀本)』 등의 시진핑 어록을 출판하고 전국적으로 시진핑 어록 학습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시에, 신문, 방송과 같은 전통적 언론매체뿐 아니라, SNS, 인터넷 등 신형 매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5년 7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기존의 국가안전법보다 국가 안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국가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7년 6월 1일자로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 안전법’은 사이버방어능력 강화, 개인 정보 보호의 목적 외에도 인터넷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홍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진핑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학습중

35. 習近平, 〈把宣傳思想工作做得更好〉, 《習進平談治國理政》, 北京: 外文出版社, 2016, p. 153.

36. Nick Taber, “How Xi Jinping Is Shaping China’s Universities,” *The Diplomat*, 2018.08.10., <https://thediplomat.com/2018/08/how-xi-jinping-is-shaping-chinas-universities>.

국(學習中國) 앱을 개발하거나, ‘우마오당(五毛黨)’이라는 댓글부대를 통해 중국공산당에 우호적인 인터넷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 2. 인터넷 통제: 전방위적 검열 시스템

1996년 중국 전역에 인터넷 서비스가 보급된 이래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1997년의 62만 명에서 2024년에 11억 800만 명까지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보급률은 78.6%에 이르렀다.<sup>37</sup> 급속한 인터넷 성장과 더불어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열과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왔다.

1998년 중국 정부는 인터넷 네트워크 통제를 목적으로 ‘황금방패 프로젝트(金盾工程)’를 개시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강력한 검열서버(Server)인 방화장성(防火長城)을 구축해 민감한 국내외 사이트를 차단해오고 있다.<sup>38</sup> 동시에 인터넷 콘텐츠를 사전에 감시 및 필터링하여 자동으로 분류해 차단한다. 전국 인터넷정보관리 시스템(全國網信系統)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총 11,159개의 웹사이트 및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4,046개 업체에 경고 또는 벌금을 부과했으며, 불법 웹사이트 10,946개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sup>39</sup> 이와 같은 통제는 해외 사이트에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구글, 페이스북, X, 유튜브 등 주요 인터넷 플랫폼의 중국 내 접속은 차단되었으며, 대체제로 자국 사이트인 바이두(百度), 웨이보(微博), 웨이신(微信), 유쿠(優酷) 등의 사용을 유도했다. 그 외에도 Apple Censorship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총 69,478개의 어플 중 19,533개가 중국 내 애플 스토어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sup>40</sup>

이러한 검열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이용자들의 가상 사설망인 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통해 차단된 플랫폼에 우회 접속하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늘어났다. 이에 중

37. “中國網民規模達11.08億人 互聯網普及率升至78.6%”, 中華人民共和國工業和信息化部, 2025.01.17., [https://wap.miiit.gov.cn/xwfb/mtbd/wzbd/art/2025/art\\_662f674e6c37473686ec84eb8923abce.html?utm](https://wap.miiit.gov.cn/xwfb/mtbd/wzbd/art/2025/art_662f674e6c37473686ec84eb8923abce.html?utm).

38. 김진용, 〈시진핑 시기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발전과 통제〉, 《아세아연구》 제60권: 2호, 2017, p. 462.

39. “2024年全國網信系統約談網站平臺11159家”, 新華網, 2025.02.25., <http://www.xinhuanet.com/202502/25/70d18c2abd74406a8450e7eb7da03934/c.html>.

40. China mainland, Apple Censorship, <https://applecensorship.com/app-store-monitor/na/CN>.

국 정부는 2017년부터 VPN 단속을 본격화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이용자를 보유한 대표적인 VPN 서비스 업체인 ‘GreenVPN’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에도 ‘텐싱VPN(天行VPN)’, ‘윈창VPN(雲牆VPN)’ 등 다수의 VPN 서비스 업체들이 규제 당국의 요구에 따라 운영을 종료했다.<sup>41</sup>

중앙 차원의 기술적 검열과 통제 조치에 더해 중국 정부는 이용자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자발적인 자기 검열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시행했다. 2017년에는 댓글 등록이 가능한 플랫폼에 대해 이용자 실명 인증을 의무화하고 실명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는 댓글 작성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sup>42</sup> 이어 2022년에는 정보 게시, 메신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확대되었다.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 신분증 번호 등을 기반으로 실명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실명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허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다.<sup>43</sup>

정부는 실명제 강화 조치의 연장선에서 정부가 직접 발급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신분증’ 도입에 나섰다. 2025년 국가인터넷정보관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을 비롯한 6개 부처는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관리방법(國家網絡身份認證公共服務管理辦法)(이하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시행에 나섰다.<sup>44</sup> 인터넷 신분증은 정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실물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인터넷 전용 번호와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넷 신분증은 휴대폰을 통한 얼굴 인식과 실물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되며,<sup>45</sup> 이후 인터넷 플랫폼에서 실명 인증 시 일반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41. “中國VPN用戶被罰 “翻牆”怎麼會違法”, *BBC*, 2019.01.10.,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46823319>.

42. “互聯網跟帖評論服務管理規定”, 中央網絡安全和信息化委員會辦公室, 2017.08.25., [https://www.cac.gov.cn/2017-08/25/c\\_1121541842.htm](https://www.cac.gov.cn/2017-08/25/c_1121541842.htm).

43. “互聯網用戶賬號信息管理規定”, 中國政府網, 2022.06.27.,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2-06/28/content\\_5698179.htm](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2-06/28/content_5698179.htm).

44. “公安部、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等六部門聯合公布《國家網絡身份認證公共服務管理辦法》”, 中國政府網, 2025.05.23., [https://www.gov.cn/lianbo/bumen/202505/content\\_7025044.htm](https://www.gov.cn/lianbo/bumen/202505/content_7025044.htm).

45. “國家網絡身份認證來了 網號+網證為妳加密!”, 央視新聞, 2025.05.25., <https://news.cctv.cn/2025/05/25/ARTIE1L24ySdcEc53vyuq7mk250524.shtml?utm>.

현재 인터넷 신분증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터넷 신분증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2025년 5월 신화통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어플 누적 다운로드 수는 1,600만 회를 넘었으며, 약 600만 명이 인터넷 신분증을 개통하였으며, 총 1,250만 건 이상의 인증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sup>46</sup>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인터넷 도입 초기부터 실시해 온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인터넷 통제와 검열에 대해 대부분의 중국 시민들은 크게 반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검열은 정치적 콘텐츠에만 제한되지 않고 비정치적 주제로까지 확장 적용되면서, 대중은 검열을 정치적 억압보다는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받아들였다. Tony Zirui Yang(2025)<sup>47</sup>의 연구에 따르면 검열된 콘텐츠 2,800만 건 중 집단 행동, 정부 비판 등 정치와 관련된 콘텐츠는 약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열 방식은 정치적 검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반감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검열과 정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검열이 일상화되면서 중국 네티즌들은 인터넷 검열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며 ‘민감어(敏感詞; Sensitive Words)’를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검열 필터를 우회하기 위해 동음이의어, 이모지, 언어 유희 등으로 표현을 재부호화하는 관행은 새로운 디지털 문화적 실천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검열 목록인 ‘블랙리스트’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민감어에 대한 자기 검열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이용자는 이를 억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집단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48</sup>

46. “國家網絡身份認證App用戶已達600萬人”, 新華網, 2025.05.23., <http://www.news.cn/20250523/d0d247f65b094d1982542f67af92af45/c.html>.

47. Tony Zirui Yang, 〈Normalization of Censorship: Evidence from China〉, 《The Journal of Politics》 Vol. 87, No. 4, 2025.

48. WeiMing Ye & Luming Zhao, 〈“I know it’s sensitive”: Internet censorship, recoding, and the sensitive word culture in China〉, 《Discourse, Context & Media》 Volume 51, February 2023, p. 5.

### 3. 사회신용시스템: 개인의 순응을 유도하는 평가-제재 시스템

2014년 5월 도입된 사회신용시스템은 정부가 사회 구성원의 신용을 매개로 삼아 각 개인을 ‘정보화’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sup>49</sup> 1999년 중국에서 ‘사회신용’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이래, 2007년 사회신용시스템 구축의 기초에 관한 논의를 거쳐, 2014년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사회신용시스템 구축 계획 강요(社會信用體系建設規劃綱要(2014-2020年), 이하 계획 강요)》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계획 강요’는 의료보건, 계획출산, 사회보장, 고용노동, 교육 및 과학연구 등 전통적으로 신용과는 무관하던 영역들까지 포괄하며 사회생활 전반을 신용체계에 편입시켰다. 나아가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인센티브와 제재를 부과하며 사회 행동에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의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sup>50</sup>

사회신용시스템은 평가 대상인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 신용등급 부여, 보상 및 처벌 조치 순으로 이뤄진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레드리스트(紅名單)’에 포함되어 대출이나 교통비, 공공시설 이용 혜택과 같은 보상을,<sup>51</sup>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블랙리스트(黑名單)’에 등록되어 특정 서비스 이용 불가와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sup>52</sup>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회신용시스템이 중앙 정부의 단일한 기준에 따라 일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와 지역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법, 교통, 세무, 공공 서비스 등 각 정부 부처에서는 독립적으로 구축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며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신용불이행 명단은 42개에 달한다.<sup>53</sup> 물론 부처 간 제도 운영의 분산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통합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사례로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하는

49. 이승은, 〈중국 사회신용시스템의 현황 및 전망: ‘빅브라더’와 빅데이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p. 1.

50. 李晟, 〈信息技術與政法傳統: 重思社會信用體系建設〉, 《中國社會科學評價》2022年 第4期, 2023.03.07., [https://www.cssn.cn/dkzgx/zgxp\\_zgshkxpj/2022nd4q\\_131885/202303/t20230307\\_5601769.shtml](https://www.cssn.cn/dkzgx/zgxp_zgshkxpj/2022nd4q_131885/202303/t20230307_5601769.shtml).

51. 김송희, 〈사회 거버넌스(社會治理)를 위한 중국 사회신용시스템의 등장과 한계〉, 《국제지역연구》 제26권: 1호, 2022, p. 198.

52. 정보은, 김진형, 〈중국의 ‘데이터 3법’ 제정과 개인정보 보호 2.0시대에 대한 의미 고찰〉, 《중국지역연구》 제9권: 3호, 2022, p. 107.

53. “42個領域嚴重失信主體名單匯總”, 信用浙江, 2024.06.21., [https://www.jindong.gov.cn/art/2024/6/21/art\\_1229701411\\_59341598.html](https://www.jindong.gov.cn/art/2024/6/21/art_1229701411_59341598.html).

악성 채무자 목록인 ‘신용불이행 피집행인 명단(失信被執行人名單)’은 연계 부처에 공유되어 다양한 제재 조치가 공동으로 적용된다. 여기에는 44개의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55개의 제재 조치가 명문화되어 있다.<sup>54</sup> 해당 명단에 한 번 등록되면 최장 5년간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금융 거래, 시장 진입, 정부 지원 및 보조금, 고위직 임명, 고액 소비, 출입국 등이 제한된다.<sup>55</sup> 또한 ‘신용 연합 보상 및 신용불량 연합 처벌 제도(守信聯合激勵和失信聯合懲戒制度)’를 도입하여 레드리스트와 블랙리스트 선정 기준을 규범화하며 각 부처 간 명단을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sup>56</sup>

중국 정부는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2015년 6월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 ‘신용중국(信用中國)’을 개설한 이후 46개 정부 부문 및 32개의 성(省)과 시(市)들과 연계시켰으며,<sup>57</sup> 같은 해 10월에는 사회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알리바바, 텐센트 등 8개 주요 ICT 관련 기업에 개인의 인터넷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sup>58</sup>

2017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이하 발개위)와 인민은행은 사회신용시스템의 구축과 시범 운용을 위해 12개 도시를 선정한 이후 2019년에는 16개, 2021년도에는 34개, 2023년도에는 68개 도시와 구(區)를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130개 지역에서 시범 운용 중이다.<sup>59</sup> 지역 차원에서도 중앙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고자 25개 지역에서 성(省)급 사회신용 관련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였으며, 15개 지역에서는 시(市)급 법규를 제정했다.<sup>60</sup> 그 외에도 다수의 지역에서는 관련 법규를 이미 심의 중이거나 입법 계획에 포함시켰다.

54. “關於對失信被執行人實施聯合懲戒的合作備忘錄”, 2016.01.20.

55. “中共中央辦公廳 國務院辦公廳印發《關於加快推進失信被執行人信用監督、警示和懲戒機制建設的意見》”, 中國政府網, 2016.09.25., [https://www.gov.cn/zhengce/2016-09/25/content\\_5111921.htm](https://www.gov.cn/zhengce/2016-09/25/content_5111921.htm).

56. “關於加強和規範守信聯合激勵和失信聯合懲戒對象名單管理工作的指導意見”, 中華人民共和國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17.11.03., [https://www.ndrc.gov.cn/xxgk/zcfb/ghxwj/201711/t20171103\\_960925.html](https://www.ndrc.gov.cn/xxgk/zcfb/ghxwj/201711/t20171103_960925.html).

57. 김승희, <사회 거버넌스(社會治理)를 위한 중국 사회신용시스템의 등장과 한계>, 《국제지역연구》 제26권: 1호, 2022, p. 198.

58. 이승은, <중국 사회신용시스템의 현황 및 전망: ‘빅브라더’와 빅데이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p. 3.

59. “68城！淄博入選全國第四批社會信用體系建設示範區”, 大眾網, 2023.08.07., <https://baijiahao.baidu.com/s?id=1773555335544135153&wfr=spider&for=pc>.

60. “黨的二十大以來, 重要信用政策制度文件梳理”, 浙江省信用中心, 2023.11.17., [https://credit.zj.gov.cn/art/2023/11/17/art\\_1229636048\\_4192.html](https://credit.zj.gov.cn/art/2023/11/17/art_1229636048_4192.html).

시범 지역들은 사회신용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각기 ‘신용 점수(信用分)’ 체계를 도입했다. 쑤저우(蘇州), 항저우(杭州), 우시(無錫), 웨이하이(威海), 하이난(海南) 등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신용 점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쑤저우(蘇州)는 2016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에 나선 사례로 꼽힌다. 쑤저우의 시화(市花)인 계화의 이름을 딴 ‘계화 포인트(桂花分)’는 5개의 주요 평가 항목과 22개 범주, 243개 세부 평가 지표<sup>61</sup>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기본점수 100점에 추가점수 100점을 더해 총 200점 만점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은 표창, 헌혈, 기부, 자원봉사 참여 등을 통해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며, 적립된 점수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공공시설 관람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sup>62</sup>

최초의 시범 지역 중 하나인 항저우는 18세 이상의 거주민과 근로자 모두에게 개인 신용 점수인 ‘첸강 포인트(錢江分)’를 부여했다. ‘첸강 포인트’는 기본정보, 법규준수, 생활 속 신용(生活用信), 상업적 신용(商業用信), 친사회적 행위 등 5개의 주요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총 1,000점 만점에 5단계 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5단계 등급은 550점 이하(신용 향상 필요), 550~600점(보통), 600~700점(양호), 700~750점(우수), 750점 이상(매우 우수)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시민은 600~750점대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시민들은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공익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점수를 올릴 수 있으며, 반대로 주택공적금(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적금) 상환 연체, 기초생활보장금 부정 수급, 공공요금 상습 체납 등의 행위로 인해 점수가 차감될 수 있다.<sup>63</sup> 신용 등급에 따라 병원 진료비 후불 결제, 대중교통 후불 결제, 주차비 할인,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항저우는 여기서 더 나아가 2022년에 전국 최초로 텐진(天津), 샤먼(廈門), 닝보(寧波), 지난(濟南) 등 10개 도시와 신용 점수 상호 인증 및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방 정부에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지면서 지방 정부별로 중요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영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sup>64</sup> 특히 COVID-19 팬데믹 대응

61. 5개 주요 평가 항목은 기본 정보, 안정성 정보, 인성(품행) 정보, 자산 정보이며, 22개 범주의 243개 세부 평가 지표는 호적, 연령, 혼인 여부, 학력 수준, 사회보험 납부 상황 등이 있다.

62. “共鑒各城市“信用分”創新應用，解鎖“信用+”工程！”，信用中國(四川)，2024.07.15., <https://credit.sc.gov.cn/yjsc/c100002/202407/f7246cefe5bc481ca5f1cbf84168ab07.shtml>.

63. “杭州推出城市個人信用分 分數越高享受的便利和服務越多”，新華網，2018.11.17.,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11/17/c\\_1123727007.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11/17/c_1123727007.htm).

에 있어 사회신용시스템이 적극 활용되었다. 2020년 상하이 시정부는 COVID-19 관련 사실 은폐(COVID-19 감염, 팬데믹 피해 지역 여행 이력, COVID-19 환자 또는 의심 환자와의 긴밀한 접촉), 의무적 의료격리 회피 등을 자행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명단(社會信用失信名單)’에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sup>65</sup> 주목할 점은, 이는 중앙 정부의 지시와는 무관한 것으로 상하이 시정부 단독으로 결정하여 관련 정보를 사회신용시스템 플랫폼에 제공하여 평가 대상자의 사회신용점수를 차감했다.<sup>66</sup>

평가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되면서 각 지역에서 혼란과 불만이 제기되자 중앙 정부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했다. 먼저, 제재 조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2021년부터 발개위, 인민은행 등 관련 부처들은 ‘전국 신용불량 제재 조치 기본 목록(全國失信懲戒措施基礎清單)’과 ‘전국 공공 신용 정보 기초 목록(全國公共信用信息基礎目錄)’을 매년 수정 보완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국 신용불량 제재 조치 기본 목록’에 제재 방식과 범위를 명시하여 각 기관이 자의적으로 제재를 추가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했다. 제재 대상은 각 분야의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로 한정했으며, 이에 따른 제재 조치 역시 14개 유형으로 제한했다. 목록에 포함된 제재 조치로는 소비 제한, 출국 제한, 진학 제한, 재정성 자금 사업 신청 제한, 우대 정책 및 편의 조치 이용 제한, 신용등급 평가 보고에 반영, 여신 심사 강화 등이 있다.<sup>67</sup>

2022년 11월 14일, 발개위, 인민은행 등 관련 부처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신용시스템 건설법(대중 의견 수렴)(中華人民共和國社會信用體系建設法(向社會公開征求意见稿))》 초안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법제화에 나섰다. 이후 《2024-2025년 사회신용시스템 건설 행동 계획(2024-2025年社會信用體系建設行動計劃)’(2024)》과 《사회신용시스템 개선에 관한 의견(關於健全社會信用體系的意見)’(2025)》을 연이어 발표하여 사회신용시스템 제도 완비와 관련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64. 이승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중국 사회신용시스템 관련 연구동향>, 《인문사회 21》 제10권: 5호, 2019, p. 235.

65. “上海：個人隱瞞病史、逃避隔離醫學觀察等將被列入社會信用失信名單”，新華網，2020.02.07.，[http://m.xinhuanet.com/2020-02/07/c\\_1125542615.htm](http://m.xinhuanet.com/2020-02/07/c_1125542615.htm).

66. Minxin Pei, “In China a poor social score affects where you can sleep, dine or live,” *AFR*, 2024.03.01., <https://www.afr.com/world/asia/in-china-a-poor-social-score-affects-where-you-can-sleep-dine-or-live-20240222-p5f6y9>.

67. “全國失信懲戒措施基礎清單(2021年版)”，國家發展改革委，人民銀行，2021.12.16.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도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독점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신용평가 기준 역시 금융 부문으로만 한정되는 여타 국가와 달리 사회신용시스템은 사회와 관련된 영역은 물론 개인의 일상생활까지도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부정승차, 무단횡단 같은 법규 위반, 가족계획 규정 위반, 심지어 불효 등도 감점 요인이 되며, 온라인상에서는 대화 내용, 게시글의 신뢰성, 쇼핑 습관 등에 대한 평가도 반영된다.<sup>68</sup>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에 따라 신용등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sup>69</sup> 사회신용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부의 대민(對民) 감시 및 통제 강화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정부의 감시가 일상생활에까지 스며들어 개개인의 행동까지 통제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중국인 2,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sup>70</sup>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 이상이 사회신용시스템을 감시도구라고 인식하지 않고 상호신뢰 가능한 사회로 도약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도시에 거주할수록 사회신용시스템을 지지하는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뷰<sup>71</sup>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지방 사회신용시스템을 수용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지지율은 정부가 사회신용시스템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요소는 최소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방 정부는 사회신용시스템 관련 보상 조치만을 강조하며 처벌이나 불이익은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배제했다. 국민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신용시스템이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규범화하

68. “중국, SNS·해외쇼핑·불효까지 감시…‘빅브러더 사회’로 가나”, 한국경제, 2016.11.29., <https://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2958091>.

69. 정보은, 김진형, <중국의 ‘데이터 3법’ 제정과 개인정보 보호 2.0시대에 대한 의미 고찰>, 《중국지역연구》 제9권: 3호, 2022, p. 107.

70. Genia Kostka, <China’s Social Credit Systems and Public Opinion: Explaining High Levels of Approval>, 《Sage Journals》 Vol. 21, No. 7, 2019, pp. 11, 14-15, 23.

71. Haili Li & Genia Kostka, <Accepting but Not Engaging with It: Digital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Run Social Credit Systems in China>, 《POLICY & INTERNET》 Vol. 14, 2022, pp. 851-852.

고, 신뢰를 증진시키며, 사회적 풍조(社會風氣)를 개선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등 중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목할 점은 지방 차원에서 사회신용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데에 시민들이 반대하기보다는 대다수가 이를 수용할 의사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주도의 디지털 감시기술 도입과 시행에 대해 중국 시민들이 점차 익숙해지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용성은 사회신용시스템이 채택한 방식 자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가 개인을 직접 통제하기보다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재편함으로써 개인의 순응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반성과 실천의 과정들은 자기검열이 동반된 행위와 사고로 이어지면서 결국 사회신용시스템에서 제시한 가치와 규칙을 자기 규율로 내면화하여 외부의 간섭과 개입 없이도 국가가 원하는 의도와 방향에 순응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sup>72</sup>

#### 4. 사회감시시스템: 험왕·쉐량·스마트시티로 구현되는 초고도 감시사회

중국 정부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인공지능 기반 감시기술 발전과 보급 확대에 나서며 초고도 감시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 안보 지출(國家財政公共安全支出; National Domestic Security Spending)은 단기간 내 급격하게 증가하며 2010년 처음으로 국방비를 앞섰다. 이후 두 항목의 격차는 2014년 0.8%에서 2016년 13%까지 커졌으며, 특히 2016년 국내 안보 지출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하며 최초로 1조 위안(약 1,374억 달러)을 돌파했다.<sup>73</sup> 국내 안보 예산은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운영 등에 지출되나, 중국 당국은 사회통제를 위한 최첨단 감시 및 추적장치, SNS상에서의 정치적 반대 목소리 검열,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의 주민 상호 감시 등에 안보 비용을 쓰고 있다.<sup>74</sup> 이러한 추세는 최근 팬데믹과 경기 침체를 겪으며 다소 잦아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항

72. 김송희, <중국 사회신용시스템과 통치전략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제29권: 1호, 2025, pp. 318, 320.

73. Adrian Zenz, "China's Domestic Security Spending: An Analysis of Available Data," The Jamestown Foundation, *China Brief* Vol. 18, Issue 4, 2018.03.12., <https://jamestown.org/program/chinas-domestic-security-spending-analysis-available-data/>.

74. Josh Chin, "China Spends More on Domestic Security as Xi's Powers Grow," *The Wall Street Journal*, 2018.03.06., <https://www.wsj.com/articles/china-spends-more-on-domestic-security-as-xis-powers-grow-1520358522>.

목 간의 격차만 감소할 뿐 여전히 국방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외 중국 정부는 최첨단 감시체계의 운영을 극대화하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통적인 정보원 작전도 동시에 펼치고 있다. 공산당은 지역사회, 대학, 국영기업에 개인이 정보원 역할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바<sup>75</sup>, 중국 지방 정부 30곳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인구의 0.73~1.1%인 최대 1,500만 명이 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6</sup>

중국의 감시시스템은 위치 및 원격감시와 생체인식정보 등을 활용한 전방위적 비디오 감시체계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되면서 감시의 범위와 수준이 한층 더 고도화되고 있다. 2005년부터 중국 정부는 중국 전역에 수억 대의 감시카메라(CCTV)와 얼굴인식 기술, 인공위성 위치추적기(GPS)로 범죄자를 추적하는 ‘텐왕공정’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도 말 기준 세계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약 10억 개의 감시카메라 중 54%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up>77</sup> 주요 국가 중 경찰, 공항 등 정부기관에서 안면인식 기술 이용도가 가장 높은 나라 역시 중국으로 알려져 있다.<sup>78</sup>

뿐만 아니라, 텐왕공정이 자금과 인구밀도 측면에서 지방까지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6년부터 농촌과 지방을 아우르는 ‘쉐량공정’을 도입하여 함께 활용하고 있다. ‘쉐량(雪亮)’은 마오쩌둥의 어록 중 ‘인민들의 눈은 눈처럼 밝다(群衆的眼睛是雪亮的)’라는 말에서 명명되었듯이, 쉐량공정은 스마트폰, 차량, 텔레비전 및 어플라이언스(Appliance)의 사물인터넷에 있는 카메라를 공공 보안 감시카메라와 연결해 운용한다.<sup>79</sup> 또한 2012년부터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 컴퓨팅, 영상인식 등 AI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기반시설을 촘촘히 연결하여 치안, 교통, 행정, 교육 등에 첨단 인프라가 적용된

75. Minxin Pei, “China’s 1% Is Watching the Other 99%,” *Bloomberg*, 2024.02.05.,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4-02-04/china-s-surveillance-state-depends-on-people-not-cameras>.

76. Minxin Pei, “Why China Can’t Export Its Model of Surveillance,” *Foreign Affairs*, 2024.02.06., <https://www.foreignaffairs.com/china/why-china-cant-export-its-model-surveillance>.

77. “Who’s watching: the cities with the most CCTV cameras,” *Geographical*, 2023.03.07., <https://geographical.co.uk/science-environment/whos-watching-the-cities-with-the-most-cctv-cameras>.

78. 이찬우,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규제 논의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권위주의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93권, 2022, p. 270.

79. 모준영, <시진핑 정부와 ‘디지털 권위주의’>, 《아세아연구》 제64권: 1호, 2021, p. 337.

지능형 도시인 ‘스마트시티(智慧城市; Smart City)’<sup>80</sup> 건설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20년 기준 중국 전역에서 진행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약 800여 개로 전 세계 스마트시티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sup>81</sup>

[그림 2] 중국의 안면인식 감시기술



출처: AP.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이나 특정 집단을 추적 및 통제하기 위해 유전자 정보까지도 수집에 나서고 있다. 중국 공안은 부계 혈통을 따라 유전되어 남성 친척들의 신원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는 Y염색체를 대거 수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허난성(河南省)에 처음으

80. 이찬우,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규제 논의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권위주의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93권, 2022, p. 279.

81. Katherine Atha, Jason Callahan, John Chen, Jessica Drun, Ed Francis, Kieran Green, Dr. Brian Lafferty, Joe McReynolds, Dr. James Mulvenon, Benjamin Rosen, and Emily Walz, “China’s Smart Cities Development,”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20.01.

로 대규모 Y염색체 데이터센터가 설립된 이후, 2022년까지 중국 31개 성·시 중 최소 25곳이 Y염색체 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sup>82</sup> 특히 유전자 정보는 윤리적 문제와 연관돼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감시시스템의 확장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텐왕을 통한 범죄자 척결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한편, 치안 강화 등 공공서비스로서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紀律檢查委員會)의 발표에 따르면 텐왕을 통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20개 국가 및 지역에서 총 14,048명의 해외 도피자를 송환하였으며, 그중 당원과 국가 공무원은 2,9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된 불법 자금은 666억 2천만 위안(한화 약 13조 8000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3</sup> 중국 관영 언론은 정부에 관한 긍정적인 보도를 이어가며 감시시스템을 정당화하는 담론 구축에 앞장섰다. 담론의 내용으로는 감시는 범죄 대응에 효과적이며, 중국의 감시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며, 감시는 국제적으로도 일반화된 관행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동시에 감시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특히 민간 기업이 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되었다.<sup>84</sup>

또한 공공서비스 차원의 긍정적인 효과도 부각되었다. 각 지역에서는 텐왕을 활용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가 새롭게 출범했다. 창사(長沙)에서는 매년 200여 명의 실종자를 찾고 5,000건 이상의 분쟁을 중재하는데 텐왕이 활용되었으며, 쑤저우(宿州)에서도 부모가 실종된 자녀를 30분 이내에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장쑤성(江蘇省)에 위치한 장인(江陰) 해사국은 텐왕에 드론을 결합하여 불법 선박 활동 사례 다수를 적발했으며, 판즈화(攀枝花)시는 저고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산불 발생 상황을 정밀하게 식별하고 있다.<sup>85</sup>

82. Isabelle Qian, Muye Xiao, Paul Mozur, and Alexander Cardia, “Four Takeaways From a Times Investigation Into China’s Expanding Surveillance State,” *The New York Times*, 2020.06.21., <https://www.nytimes.com/2022/06/21/world/asia/china-surveillance-investigation.html>.

83. “中央紀委網站：‘天網’十年已追回外逃人員超1.4萬人”，北京日報，2025.03.27., <https://news.bjd.com.cn/2025/03/27/11110290.shtml>.

84. Daria Impiombato, Yvonne Lau, and Luisa Gyhn, “Surveillance, privacy and agency: Insights from China,” *ASPI Policy Brief No. 74*, 2023.10.12., p. 14.

85. “從街頭到雲端：天網工程的民生溫度，不止於‘看’”，搜狐，2025.08.20., [https://www.sohu.com/a/925891229\\_121066035?utm\\_](https://www.sohu.com/a/925891229_121066035?utm_)

[그림 3] 텐왕공정으로 송환되는 해외 도피자들



출처: Xinhua.

사회 전역에서 이뤄지는 전방위적 감시에 대해 중국인들은 일부 불편함을 드러내면서도, 중앙 정부의 결정을 옹호하고 수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시민들은 감시시스템이 범죄 억제에 효과를 보이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021년 중국 난두개인정보보호연구센터(南都個人信息保護研究中心)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9,986명 중 48%는 안면인식 기술이 중국 사회 곳곳에 남용되고 있다고 답했지만, 국가기관이 치안을 위해 사용되는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서는 75% 이상의 응답자는 ‘필요하다’고 답하고 15%의 응답자만 ‘명확한 반대’를 표시했다.<sup>86</sup> 2022년 중국 거주자

86. “報告顯示：近半數受訪者認為人臉識別有濫用趨勢”，中國青年報, 2021.12.25., <https://new.qq.com/rain/a/20211225A04R0X00?>.

5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거주 지역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수에 관해 질문했을 때 응답자의 77%가 현재와 동일하거나 더 많은 카메라 설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sup>87</sup>

시민들의 지지가 더해지면서 감시시스템의 효과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AI 감시기술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집단 행동의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sup>88</sup> 이는 이러한 감시시스템이 중국의 사회통제에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87. Daria Impiombato, Yvonne Lau, and Luisa Gyhn, "Surveillance, privacy and agency: Insights from China," *ASPI Policy Brief* No. 74, 2023.10.12., 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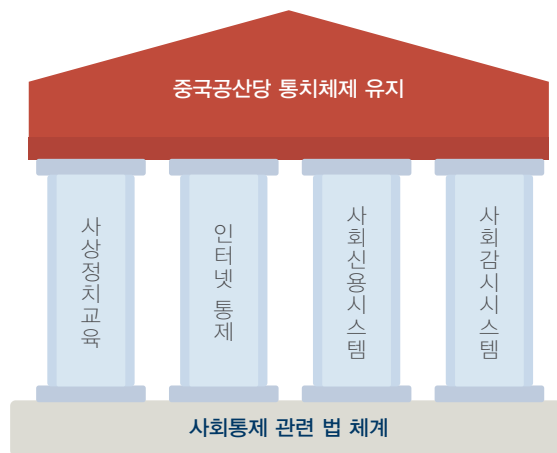
88. "中國人頭頂上的監控攝像機 老大哥在盯著妳", *VOA*, 2022.08.28., <https://www.voachinese.com/a/ai-technology-has-become-an-effective-tool-for-china-s-control-over-its-citizens-20220826/6718069.html>.

## IV. 중국 사회통제의 특징과 함의

### 1. 중국 사회통제의 특징

상술한 바와 같이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은 법 체제를 재정립하고 사상정치교육, 인터넷 통제, 사회신용시스템, 톈왕공정 등의 사회감시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통제를 강화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사회통제 방식은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중국 사회통제 메커니즘 구성도



여기에서 중국공산당은 연성(soft) 통제방식과 경성(hard) 통제방식을 연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성 통제방식은 사상정치교육과 인터넷 통제를 포함하는데, 중국공산당은 이를 통해서 중국 국민들에게 중국공산당이 기대하는 신념을 심고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자연스럽고 수용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다. 반면, 경성 통제방식은 사회신용시스템과 톈왕 감시체계로써 각 개인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화하여 평가함으로써 실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연성 통제방식을 보완하고 중국 국민들이 중국공산당 통치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분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사회통제 방식은 어릴 적부터 사상정치교육을 통해서 각 개인의 내면화 과정을 거치고 ‘사회 안정’과 ‘범죄 예방’이라는 명확한 목표하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은연

중에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국민들은 중국 정부의 사회통제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사생활 침해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인식보다는 ‘사회 안정’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며 대체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사회통제에 대한 외부의 우려와는 달리, 중국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감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 2. 중국 사회통제의 함의

### 1) 대내적 함의

사회통제의 강화는 역설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위기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개혁개방 정책 이후 정체성의 논란에 휩싸였고, 그 동안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근거가 됐던 외적 성과가 흔들리는 시점에서 중국공산당은 중국 내부를 단속하고 중국공산당 통치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런 만큼 중국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사회의 불안정성이 정치 변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억제한다.

2022년 11월 중국 각지에서 ‘백지시위’가 발생했다. 중국의 엄격한 COVID-19 격리 정책에 대한 반발로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新疆維吾爾自治區 烏魯木齊)에서 시작된 시위는 곧 중국 각지로 확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진핑 퇴진’ 등 과격한 정치구호가 나왔다. 202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되고 시진핑 3기를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백지시위’가 중국 정치변동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중국의 백지시위는 결국 ‘찾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고, 중국 사회에 어떤 반향도 일으키지 못했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 공간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기술의 발전과 SNS의 확산으로 중국 내부 동향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시위에 대한 보도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2025년 8월에는 쓰촨성(四川省) 장유시(江油市)에서 수 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위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시위가 곧 ‘시진핑 물러가라’, ‘중국공산당 물러가라’ 등의 정치 시위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 [그림 5] 중국의 백지시위



출처: 연합뉴스.

이러한 중국 내 시위는 중국 사회에 축적된 중국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는 사례인 동시에 중국공산당 통치체제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서구 언론에서는 이를 중국공산당 통치체제의 불안정성과 연결해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중국 사회 내부에서 중국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는 징후가 나타나면서 중국 정치 변동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통제는 이러한 시위가 전국적이고 지속적인 반정부 시위로 발전하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텐왕공정의 감시시스템은 시위자 개인의 위험등급과 이동기록을 확인하고 어느 규모 이상의 시위대가 모이는 것을 막는 한편, 사회신용시스템은 중국 국민이 경제적·신체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만든다. 이는 중국 사회의 정치적 불만이 축적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대규모로 표출되며 정치적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에 용이하다. 비록 이러한 사회통제가 중국공산당의 통치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 정치 및 사회에 대한 객관적 관찰을 제한함으로써 중국 사회의 불투명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 국민의 대정부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를 방증한다. 2021년 캐나다 요크 대학교(York University)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는 COVID-19 팬데믹으로 중국공산당 통치와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이 전 세계에 확산된 후에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에 대한 중국 국민의 신뢰도가 2018년 95%보다 높은 98%로 상승했다.<sup>89</sup>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21세기 중국 센터(21st Century China Center)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취업 및 소득이 급격하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응답자들의 대정부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sup>90</sup>

## 2) 대외적 함의

### 가. 연성 통제방식: 국민 의식화를 통한 대서구 대결 조장

이데올로기 전략의 관점에서 중국의 정치사상교육은 대중들의 민족의식과 서구에 대한 반감을 고취시킴으로써 당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에 어느 정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공허한 주장으로 인식되는 현 상황 속에서 중국의 사상정치교육은 중국의 근현대사와 세계 정세 등의 과목을 통해서 서구 열강들의 침략과 수탈을 경험한 수치의 역사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서구 및 주변국들의 견제를 강조하고, 중국공산당의 시대 인식과 국가관을 주입하고 있다. 이런 사상정치교육을 통해서 중국은 국내에 '사회주의 대 민주주의'라는 대결구도가 아니라 '중국 대 서구'라는 대결구도를 형성했다. 마치 한국인이 일본에 대하여 공동의 적대감을 느끼듯이 중국 대중들은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반감과 저항 대신에 서구 국가들에 대한 반감을 먼저 느끼게 유도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 이것은 대중들의 응집과 당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는 데에 유리하다.

89. "Chinese people's trust in government increased to 98 percent after the pandemic: survey," *People's Daily*, 2021.05.14, <https://peoplesdaily.pdnews.cn/china/er/30001445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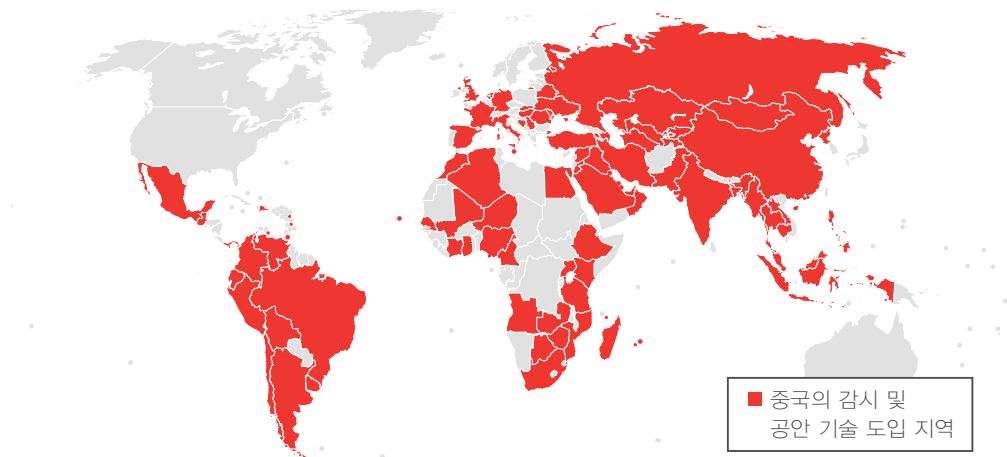
90. "China from the Ground Up: What 16 Waves of Public Opinion Surveys Tell Us About China and Chinese Views," China Data Lab at the 21st Century China Center of UC San Diego School of Global Policy and Strategy, updated September 25, 2025 (originally published December 5, 2023), <https://chinadatalab.ucsd.edu/viz-blog/china-from-the-ground-up-what-16-waves-of-public-opinion-surveys-tell-us-about-china-and-chinese-views/>.

그것이 중국공산당에 대한 불만 표출을 제한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의 통치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고립을 자초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상정치교육에 기인한 중국 국민들의 애국주의는 한국 등 주변국의 반감을 사고 한중 국민의 상호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즉, 연성 통제방식이 중국 대중들의 민족의식과 자긍심을 높이며 국내 정치에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는 있지만,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을 높여 중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 나. 경성 통제방식: 권위주의 사회통제 기술의 수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강화되는 중국의 사회통제는 국제사회에 중국식 통제방식의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사회통제 기술을 다른 권위주의 정권에 수출해 왔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 관리 세미나, 정책교육 세미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격차에 직면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중국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인프라, 전자상거래, 사이버정책, 차세대 네트워크 표준 등 첨단기술과 관련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6]은 중국의 감시 및 공안 기술의 글로벌 확산 정도를 보여준다.

[그림 6] 중국의 감시 및 공안 기술 도입 국가 현황



출처: Sheena Chestnut Greitens, “Dealing with Demand for China’s Global Surveillance Exports,” Brookings Institution, April 2020, p. 4, Figure 2를 바탕으로 재구성.

에콰도르, 이집트 등의 국가에 세워진 스마트시티는 이미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과 감시카메라, 인터넷 통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sup>91</sup>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감시 및 공안 기술 플랫폼을 채택한 국가는 이미 80개국에 달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권위주의 정권들에 대한 중국의 기술 수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지만, 중국은 최근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제협력이라는 명목하에 중국의 사회통제체제가 더욱 빠르게 확산된다면, 그것은 개도국의 권위주의 정권 유지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의 배타적인 감시시스템과 관련 기술은 미국 등 서구와의 기술경쟁을 넘어 중국식 통제에 대한 우려와 반발을 확산시키고 있다. 화웨이의 백도어(Back Door)에 대한 우려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대표적 사례이다. 중국이 첨단기술을 사회통제에 활용할수록 서구의 대중국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기술협력, 중국식 체제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이어져 중국의 국제협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

91. Joshua Kurlantzick, 'China's Digital Silk Road Initiative: A Boon for Developing Countries or a Danger to Freedom?' *The Diplomat*, 2020.12.17., <https://thediplomat.com/2020/12/chinas-digital-silk-road-initiative-aboon-for-developing-countries-or-a-danger-to-freedom>.

## V. 결론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의 기술굴기를 기반으로 중국 사회에 대한 사회통제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경기하방 압력, 중국 정치의 제도화 훼손,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 서구 사상의 확산, 중국공산당 통치에 대한 반발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 안정을 확보해 중국공산당 통치체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명목적으로 사회 안정과 범죄 예방을 주장하고 그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동시에 사상정치교육을 강화하고 언론 및 인터넷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수용하고, 시진핑 정부의 사회통제에 대한 반감을 완화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이러한 사회통제는 중국 사회 내에서 중국 국민들의 행동을 제약함으로써 중국공산당 통치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어 대규모의 시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국공산당의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으로 중국 사회 내 정치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축적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 정치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외적으로 중국의 사회통제는 ‘디지털 실크로드’의 이름하에서 개도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전파되며 확산되고 있다. 그것이 해당 국가의 권위주의 정권 유지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권위주의 통치 방식과 그에 대한 지지를 확산함으로써 자유, 민주,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사회통제는 중국 내부의 상황으로만 볼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게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도전이 될 수 있다. 시진핑 정부가 사회통제를 위해서 사상정치교육을 강화하고 애국주의에 기반한 인터넷 영상에 관대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한중 국민 간에는 문화 충돌을 넘어 가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역사와 문화, 가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 국민 간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치열해진다면 한중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중국 사회통제 방식, 즉 관련 기술과 정책을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한다는 점에서 한중 간 체제와 가치의 이질성 문제,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제표준 문제가 한국의 국제협력과정에서 불거질 위험성도 있다. 글로벌 사우스 모든 국가가 중국식 담론과 통치 방식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겠지만,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서 최

소한 그것에 공감하거나 자국의 권위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일부 수용하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중국의 사회통제가 중국 국내 정치 외에도 한중 관계, 한국의 국제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 중국의 사회통제의 글로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 나갈 때 한국 국민이 중국을 방문할 시 중국의 사회통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내적으로 중국 방문 시 주의 사항을 교육하고 배포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의 소통 과정에서 한국 국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제기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 참고문헌

### 1. 국문 자료

- 김송희, 〈사회 거버넌스(社會治理)를 위한 중국 사회신용시스템의 등장과 한계〉, 《국제지역연구》 제26권: 1호, 2022.
- 김정애, 〈중국 개정 반간첩법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3권: 4호, 2023.
- 김준영, 〈중국 국가안전법제의 체계 연구-신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을 중심으로-〉, 《중국법연구》 제32집, 2017.
- 김진용, 〈시진핑 시기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발전과 통제〉, 《아세아연구》 제60권: 2호, 2017.
- 모준영, 〈시진핑 정부와 ‘디지털 권위주의’〉, 《아세아연구》 제64권: 1호, 2021.
- 정보은, 김진형, 〈중국의 ‘데이터 3법’ 제정과 개인정보 보호 2.0시대에 대한 의미 고찰〉, 《중국지역연구》 제9권: 3호, 2022.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_번역본(2024.02.27.개정, 2024.05.01.시행)”, 국회도서관, 2025.02.20.
- 이동규, 〈중국공산당 이데올로기 전략의 효용성 연구 - 중국의 정치사상교육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68권, 한국중국문화학회, 2020.
- 이승은, 〈중국 사회신용시스템의 현황 및 전망: ‘빅브라더’와 빅데이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이정표, 〈중국 데이터보안법에 대한 연구-‘중요데이터의 식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3권: 4호, 2022.
- 이찬우,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규제 논의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권위주의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93권, 2022.
- “중국 반간첩법(2023년 개정) 전문 (번역본)”, 중앙일보, 2023.07.0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5430>.
- “중국, SNS·해외쇼핑·불효까지 감시...‘빅브러더 사회’로 가나”, 한국경제, 2016.11.29., <https://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2958091>.

## 2. 중문 자료

- 安祥仁, 《中國共產黨意識形態理論的當代歷史發展》,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5.
- “報告顯示：近半數受訪者認為人臉識別有濫用趨勢”, 中國青年報, 2021.12.25., <https://new.qq.com/rain/a/20211225A04R0X00?>
- 陳錫敏, 〈思想政治理論課與大學生國家認同〉, 《教學與研究》2期, 2017.
- “重磅！回顧“十大反間諜案例” 起底境外間諜機關卑劣手法”, 央視網, 2024.04.14., [https://content-static.cctvnews.cctv.com/snow-book/index.html?item\\_id=17747072820584725277](https://content-static.cctvnews.cctv.com/snow-book/index.html?item_id=17747072820584725277).
- “重磅！數據安全法實施近兩年來的處罰案例分析”, 搜狐, 2023.08.17., [https://www.sohu.com/a/712618505\\_120667251?utm](https://www.sohu.com/a/712618505_120667251?utm).
- “從街頭到雲端：天網工程的民生溫度，不止於‘看’”, 搜狐, 2025.08.20., [https://www.sohu.com/a/925891229\\_121066035?utm](https://www.sohu.com/a/925891229_121066035?utm).
- “黨的二十大以來，重要信用政策制度文件梳理”，浙江省信用中心, 2023.11.17., [https://credit.zj.gov.cn/art/2023/11/17/art\\_1229636048\\_4192.html](https://credit.zj.gov.cn/art/2023/11/17/art_1229636048_4192.html).
- “公安部、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等六部門聯合公布《國家網絡身份認證公共服務管理辦法》”, 中國政府網, 2025.05.23., [https://www.gov.cn/lianbo/bumen/202505/content\\_7025044.htm](https://www.gov.cn/lianbo/bumen/202505/content_7025044.htm).
- “共鑒各城市“信用分”創新應用，解鎖“信用+”工程！”, 信用中國(四川), 2024.07.15., <https://credit.sc.gov.cn/xysc/c100002/202407/f7246cefe5bc481ca5f1cbf84168ab07.shtml>.
- “關於對失信被執行人實施聯合懲戒的合作備忘錄”, 2016.01.20.
- “關於加強和規範守信聯合激勵和失信聯合懲戒對象名單管理工作的指導意見”, 中華人民共和國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17.11.03., [https://www.ndrc.gov.cn/xxgk/zcfb/ghxwj/201711/t20171103\\_960925.html](https://www.ndrc.gov.cn/xxgk/zcfb/ghxwj/201711/t20171103_960925.html).
- “國家網絡身份認證來了 網號+網證為妳加密！”, 央視新聞, 2025.05.25., <https://news.cctv.cn/2025/05/25/ARTIE1L24ySdcEc53vyuq7mk250524.shtml?utm>.
- “國家網絡身份認證App用戶已達600萬人”, 新華網, 2025.05.23., <http://www.news.cn/20250523/d0d247f65b094d1982542f67af92af45/c.html>.
- “杭州推出城市個人信用分 分數越高享受的便利和服務越多”, 新華網, 2018.11.17.,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11/17/c\\_1123727007.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11/17/c_1123727007.htm).

- “互聯網跟帖評論服務管理規定”，中央網絡安全和信息化委員會辦公室，2017.08.25., [https://www.cac.gov.cn/2017-08/25/c\\_1121541842.htm](https://www.cac.gov.cn/2017-08/25/c_1121541842.htm).
- “互聯網用戶賬號信息管理規定”，中國政府網，2022.06.27.,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2-06/28/content\\_5698179.htm](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2-06/28/content_5698179.htm).
- “【舉案說法】泄密案例來了：這三種心理最要不得！”，共產黨員網，2022.07.11., <https://www.12371.cn/2022/07/11/ARTI1657494005855691.shtml>.
- 李晟，〈信息技術與政法傳統：重思社會信用體系建設〉，《中國社會科學評價》2022年第4期，2023.03.07., [https://www.cssn.cn/dkzgx/zgx/zgshkxpj/2022nd4q\\_131885/202303/t20230307\\_5601769.shtml](https://www.cssn.cn/dkzgx/zgx/zgshkxpj/2022nd4q_131885/202303/t20230307_5601769.shtml).
- 清華大學智能法治研究院，“我國《數據安全法》生效以來行政執法情況報告”，安全內參，2023.06.17., <https://www.secrss.com/articles/55729>.
- “全國失信懲戒措施基礎清單(2021年版)”，國家發展改革委，人民銀行，2021.12.16.
- “上海：個人隱瞞病史、逃避隔離醫學觀察等將被列入社會信用失信名單”，新華網，2020.02.07., [http://m.xinhuanet.com/2020-02/07/c\\_1125542615.htm](http://m.xinhuanet.com/2020-02/07/c_1125542615.htm).
- “上海市通報5起泄密典型案例”，上海市國家保密局，2022.06.27., <http://www.shbmj.gov.cn/shbmj/gzdt/bmj/17225.jhtml>.
- 王鍊，曹瑩，“從《反間諜法》的修訂看企業的國家安全合規管理義務(下)”，環球律師事務所，2023.06.15., <https://www.glo.com.cn/Content/2023/06-16/1052094534.html>.
- 習近平，〈把宣傳思想工作做得更好〉，《習近平談治國理政》，北京：外文出版社，2016.
- “在第十三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壹次會議上的講話”，人民日報，2018.03.21., <http://lianghui.people.com.cn/2018npc/n1/2018/0321/c417507-29879341.html>.
- “浙江省通報7起違反保密法律法規典型案例”，浙江省國家保密局，2024.09.23., [https://www.zjbm.gov.cn/art/2024/9/23/art\\_1228981945\\_58517264.html](https://www.zjbm.gov.cn/art/2024/9/23/art_1228981945_58517264.html).
- “中央紀委網站：‘天網’十年已追回外逃人員超1.4萬人”，北京日報，2025.03.27., <https://news.bjd.com.cn/2025/03/27/11110290.shtml>.
- “中共中央辦公廳國務院辦公廳印發《關於加快推進失信被執行人信用監督、警示和懲戒機制建設的意見》”，中國政府網，2016.09.25., [https://www.gov.cn/zhengce/2016-09/25/content\\_5111921.htm](https://www.gov.cn/zhengce/2016-09/25/content_5111921.htm).
- “中國共產黨黨內統計公報”，中國政府網，2025.06.30.,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506/content\\_7029995.htm](https://www.gov.cn/yaowen/liebiao/202506/content_7029995.htm).

- “中國人頭頂上的監控攝像機 老大哥在盯著妳”，VOA，2022.08.28.，<https://www.voachinese.com/a/ai-technology-has-become-an-effective-tool-for-china-s-control-over-its-citizens-20220826/6718069.html>.
- “中國網民規模達11.08億人 互聯網普及率升至78.6%”，中華人民共和國工業和信息化部，2025.01.17.，[https://wap.miit.gov.cn/xwfb/mtbd/wzbd/art/2025/art\\_662f674e6c37473686ec84eb8923abce.html?utm](https://wap.miit.gov.cn/xwfb/mtbd/wzbd/art/2025/art_662f674e6c37473686ec84eb8923abce.html?utm).
- 中國中央文獻研究室編，《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第十九冊》，中央文獻出版社，1998.
- 中國中央文獻研究室編，《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選編》(上)，中央文獻出版社，1982.
- “中國VPN用戶被罰 “翻牆”怎麼會違法”，BBC，2019.01.10.，<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46823319>.
- “中華人民共和國反間諜法(主席令第十六號)”，中國政府網，2014.11.01.，[https://www.gov.cn/zhengce/2014-11/01/content\\_2775484.htm](https://www.gov.cn/zhengce/2014-11/01/content_2775484.htm).
- “中華人民共和國反間諜法”，中國政府網，2023.04.27.，[https://www.gov.cn/yaowen/2023-04/27/content\\_5753385.htm](https://www.gov.cn/yaowen/2023-04/27/content_5753385.htm).
- “中華人民共和國保守國家秘密法”，中國政府網，2010.04.30.，[https://www.gov.cn/flfg/2010-04/30/content\\_1596420.htm](https://www.gov.cn/flfg/2010-04/30/content_1596420.htm).
- “中華人民共和國保守國家秘密法”，中國政府網，2024.02.28.，[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02/content\\_6934648.htm](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02/content_6934648.htm).
- “中華人民共和國數據安全法”，中國人大網，2021.06.10.，[http://www.npc.gov.cn/npc/c2/c30834/202106/t20210610\\_311888.html](http://www.npc.gov.cn/npc/c2/c30834/202106/t20210610_311888.html).
- “最高罰款100萬！31起《數據安全法》執法案例盤點！”，搜狐，2023.07.14.，[https://www.sohu.com/a/700016470\\_121647215](https://www.sohu.com/a/700016470_121647215).
- “2024年全國網信系統約談網站平臺11159家”，新華網，2025.02.25.，<http://www.xinhuanet.com/20250225/70d18c2abd74406a8450e7eb7da03934/c.html>.
- “42個領域‘嚴重失信主體名單’匯總”，信用浙江，2024.06.21.，[https://www.jindong.gov.cn/art/2024/6/21/art\\_1229701411\\_59341598.html](https://www.jindong.gov.cn/art/2024/6/21/art_1229701411_59341598.html).
- “68城！淄博入選全國‘第四批社會信用體系建設示範區’”，大眾網，2023.08.07.，<https://baijiahao.baidu.com/s?id=1773555335544135153&wfr=spider&for=pc>.

### 3. 영문 자료

Adrian Zenz, 〈China's Domestic Security Spending: An Analysis of Available Data〉, The Jamestown Foundation, *China Brief* Vol. 18, Issue 4, 2018.03.12., <https://jamestown.org/program/chinas-domestic-security-spending-analysis-available-data/>.

Bruce Dickson, 〈Who Wants to be a Communist? Career Incentives and Mobilized Loyalty in China〉, *China Quarterly* Vol. 217, 2013.

“China from the Ground Up: What 16 Waves of Public Opinion Surveys Tell Us About China and Chinese Views,” China Data Lab at the 21st Century China Center of UC San Diego School of Global Policy and Strategy, updated September 25, 2025 (originally published December 5, 2023), <https://chinadatalab.ucsd.edu/viz-blog/china-from-the-ground-up-what-16-waves-of-public-opinion-surveys-tell-us-about-china-and-chinese-views/>.

China mainland, Apple Censorship, <https://appcensorship.com/app-store-monitor/na/CN>.

“Chinese people's trust in government increased to 98 percent after the pandemic: survey,” *People's Daily*, 2021.05.14, <https://peoplesdaily.pdnews.cn/china/er/30001445073>.

Chris Buckley, “China Takes Aim at Western Ideas,” *The New York Times*, 2013.08.19., <https://www.nytimes.com/2013/08/20/world/asia/chinas-new-leadership-takes-hard-line-in-secret-memo.html>.

Daria Impiombato, Yvonne Lau, and Luisa Gyhn, “Surveillance, privacy and agency: Insights from China,” *ASPI Policy Brief* No.74, 2023.10.12.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Exclusive: Internal Chinese report warns Beijing faces Tiananmen-like global backlash over virus - sources,” *Reuters*, 2020.05.04.,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china-sentiment-ex-idUSKBN22G19C>.

Genia Kostka, 〈China's Social Credit Systems and Public Opinion: Explaining

- High Levels of Approval), *《Sage Journals》*, Vol. 21, No. 7, 2019.
- Haili Li & Genia Kostka, <Accepting but Not Engaging with It: Digital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Run Social Credit Systems in China>, *《POLICY & INTERNET》*, Vol. 14, 2022.
- Isabelle Qian, Muiyi Xiao, Paul Mozur, and Alexander Cardia, “Four Takeaways From a Times Investigation Into China’s Expanding Surveillance State,” *The New York Times*, 2020.06.21., <https://www.nytimes.com/2022/06/21/world/asia/china-surveillance-investigation.html>.
- Josh Chin, “China Spends More on Domestic Security as Xi’s Powers Grow,” *The Wall Street Journal*, 2018.03.06., <https://www.wsj.com/articles/china-spends-more-on-domestic-security-as-xis-powers-grow-1520358522>.
- Joshua Kurlantzick, “China’s Digital Silk Road Initiative: A Boon for Developing Countries or a Danger to Freedom?,” *The Diplomat*, 2020.12.17., <https://thediplomat.com/2020/12/chinas-digital-silk-road-initiative-aboon-for-developing-countries-or-a-danger-to-freedom>.
- Katherine Atha, Jason Callahan, John Chen, Jessica Drun, Ed Francis, Kieran Green, Dr. Brian Lafferty, Joe McReynolds, Dr. James Mulvenon, Benjamin Rosen, and Emily Walz, “China’s Smart Cities Development,”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20.01.
- Li Ping, Zhong Minghua, Lin Bin, and Zhang Hongjuan, <Deyu as moral education in modern China: ideological functions and transformations>,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 33, No. 4, 2004.
- Lupita H.R. Kim, <Complying with Global Standards, Changes in Political Educa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Knowledge Cultures》*, Vol. 1, No. 3, 2013.
- Minxin Pei, “China’s 1% Is Watching the Other 99%,” *Bloomberg*, 2024.02.05.,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4-02-04/china-s-surveillance-state-depends-on-people-not-cameras>.
- Minxin Pei, “In China a poor social score affects where you can sleep, dine or live,” *AFR*, 2024.03.01., <https://www.afr.com/world/asia/in-china-a-poor-social-score-affects-where-you-can-sleep-dine-or-live-20240222-p5f6y9>.

- Minxin Pei, 『The Sentinel State: Surveillance and the Survival of Dictatorship in Chin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24.
- Minxin Pei, “Why China Can’t Export Its Model of Surveillance,” *Foreign Affairs*, 2024.02.06., <https://www.foreignaffairs.com/china/why-china-cant-export-its-model-surveillance>.
- Nick Taber, “How Xi Jinping Is Shaping China’s Universities,” *The Diplomat*, 2018.10.10., <https://thediplomat.com/2018/08/how-xi-jinping-is-shaping-chinas-universities>.
- Samuel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 Sheena Chestnut Greitens, “Dealing with demand for China’s Global Surveillance Exports,” Brookings Institution, April 2020., <https://www.brookings.edu/research/dealing-with-demand-for-chinas-globalsurveillance-exports>.
- Simon Denyer, “China’s president takes campaign for ideological purity into universities, schools,” *The Washington Post*, 2016.12.12.,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chinas-president-takes-campaign-for-ideological-purity-into-universities-schools/2016/12/12/2395ec42-c047-11e6-b20d-3075b273feeb\\_story.html](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chinas-president-takes-campaign-for-ideological-purity-into-universities-schools/2016/12/12/2395ec42-c047-11e6-b20d-3075b273feeb_story.html).
- Tony Saich, 『Governance and Politics of China』, London: Palgrave, 2004.
- Tony Zirui Yang, 〈Normalization of Censorship: Evidence from China〉, 《The Journal of Politics》 Vol. 87, No. 4, 2025.
- WeiMing Ye & Luming Zhao, 〈“I know it’s sensitive”: Internet censorship, recoding, and the sensitive word culture in China〉, 《Discourse, Context & Media》 Vol. 51, 2023.
- “Who’s watching: the cities with the most CCTV cameras,” *Geographical*, 2023.03.07., <https://geographical.co.uk/science-environment/whos-watching-the-cities-with-the-most-cctv-cameras>.
- Xiaobo Su, 〈Revolution and Reform: the role of ideology and hegemony in Chinese politic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0, No. 69, 2011.
- Zhao Dingxin, 〈The Mandate of Heaven and Performance i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hin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53, No. 3,  
2009.

**ASAN**  
REPORT

## 시진핑 시기 중국의 사회통제 메커니즘

발행일 2026년 6월

지은이 이동규, 김지연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이메일 [info@asaninst.org](mailto: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http://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Copyright © 2026 by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SBN 979-11-5570-339-7 95340 (PDF)



ISBN 979-11-5570-339-7